

춘천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355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3. 14.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2. 4.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2020. 8. 31.자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2020차전3413)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20. 9. 18. 확정되었는데, 위 지급명령은 ‘D은 원고에게 27,028,146원 및 그 중 10,911,027원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그 청구원인은 ‘원고가 E 주식회사의 D에 대한 채권을 최종 양수하였으므로, D은 원고에게 양수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4.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15)와 망인의 자녀들인 D, G, C, H, I, J(각 상속지분 2/15)이 있었는데, 피고와 위 자녀들 모두는 2022. 4.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27,028,146원 및 그 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K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D은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22. 4. 1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을 상속받은 후 피고 등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위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로써 D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음은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D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분할협의 중 D의 상속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의의 수익자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D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D의 어머니로서 D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지급명령 정본은 D의 동거인인 피고에게 송달되고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이 사건 분할협의를(갑 제6호증)에도 피고와 D의 각 주소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속포기 여부

피고는 D이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인 2013. 5. 28. 이미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D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주장과 같이 D이 2013. 5. 28. 재산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¹⁾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D의 채무조정 가능성 여부

피고는 D이 2022. 11. 10. L기관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향후 채무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그와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L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이 된다고 하여도, 채권자가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원두

별지

1)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